

#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2018. 02. 08.

개정 2020. 7. 9., 2021. 2. 17., 2022. 10. 1., 2022. 12. 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연구성취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위원회 구성 및 의결)** 장학위원회는 대학원위원회로 같음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장학금지급 규모 결정
2. 장학금지급대상자별 지급기준
3. 기타 장학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장학금 종류와 수혜대상)**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2. 학업격려장학금
3. 모교장학금
4. 외국인장학금
5. 교직원복지장학금
6. 가족장학금
7. 참사랑장학금
8. 다문화장학금
9. 귀순자장학금
10. **삭제** (2022. 10. 1.)
11. 인턴십장학금
12. 외부장학금
13. **삭제** (2022. 10. 1.)
14. **해외파견장학금** (신설 2022. 10. 1.)
15. **토픽장학금** (신설 2022. 10. 1.)

② 교외장학금 : 교외장학금은 지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 및 지급한다.

**제4조(장학금 지급기준)** 교내장학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학금 지급시행에 필요한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이 정한다.

1. 성적우수장학금은 성적 평점평균이 4.16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0. 1.)
2. 일반 휴학중인 자, 위반으로 징계중인 자, 학기 초과자에게는 해당 학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학금 선발에 있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평균평점, 신청학점, 학기차, 총점, 연령이 높은 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
4. 지급대상 인원산출 시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5. 성적장학금 대상자가 다른 장학금을 수혜할 경우 차석이 승계한다.
6. **삭제** (2022. 10. 1.)
7. 별표1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편입학 및 재입학한 학생의 경우, 제시된 장학 혜택 중 입학금에 해당하는 부

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2. 17.)

**제5조(장학생 선발 및 신청)** 성적장학금을 제외한 기타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매학기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장학금 수혜 통보)** 장학금 수혜자로 등록금을 감면받는 자에 한하여 등록금 감면액을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하여 통보한다.

**제7조(장학금 중복수혜금지)** ① 각종 장학금의 이중 수혜를 금지하며 중복이 될 경우 수혜자에 유리한 한 종류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부장학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하나, 전체 등록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단, 정부초청 외국인 대학원 장학생(GKS)의 경우, [별표1]과 같이 입학금 전액을 면제하고 등록금은 학기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한하여 교내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2017학년도부터 지급된 장학금은 이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본다.
3. (기존 각 대학원 장학금 지급시행세칙 폐지)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기존의 각 대학원 장학금 지급시행세칙은 폐지한다.

#### 부 칙(2018. 11. 07.)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20. 7. 9.)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 2. 17.)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 10. 1.)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별표] 5호중 해외파견장학금은 2022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2. [별표] 6호 외국인장학금은 2023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자는 기존 규정을 따른다.
  3. 일반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정원내) 장학금 지급기준은 2023년까지는 기존 예외규정을 적용하며, 이후에는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을 따른다.
  4. (통역번역대학원 학업격려장학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통역번역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학업격려장학금은 기존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 교내장학금 지급종류 및 방법**

**1. 일반대학원**

구분	성적기준 및 대상인원	장학금액
성적우수장학금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16 이상 -재학생 10%	수업료 80% (1명) 수업료 60% (기타)
모교장학금	이 대학교 졸업자	입학금 100%, 수업료 50%
학업격려장학금	모교출신 제외 전체	수업료 40%

\* 성적우수장학금 장학인원 기준은 석사/박사 각 과정별로 학기차 구분없이 전체 성적순위 산정 단, 석·박사통합과정은 1-4학기차는 석사과정으로, 5학기차 이상은 박사과정으로 봄

**2. 교육대학원**

구분	성적기준 및 대상인원	장학금액	
성적우수장학금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16 이상 -재학생 10%	수업료 80% (1명) 수업료 60%(기타)	
모교장학금	이 대학교 졸업자	교직과정	입학금 100%, 수업료 30%
		비교직과정	입학금 100% , 수업료 50%
학업격려장학금	모교출신 제외 전체	수업료 30%	

\* 성적우수장학금 장학인원 기준은 각 과정별로 학기차 구분없이 전체 성적순위 산정

**3. 통역번역대학원**

구분	성적기준 및 대상인원	장학금액
성적우수장학금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16 이상 -재학생 10%	수업료 80% (1명) 수업료 60%(기타)
모교장학금	이 대학교 졸업자	입학금 50%, 수업료 30%

\* 성적우수장학금 장학인원 기준은 각 과정별로 학기차 구분없이 전체 성적순위 산정

**4. 산업경영대학원**

구분	성적기준 및 대상인원	장학금액
성적우수장학금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평균 4.16 이상 -재학생 10%	수업료 80% (1명) 수업료 60%(기타)
모교장학금	이 대학교 졸업자	입학금 50%, 수업료 30%
학업격려장학금	직장인 재직자, 지원전공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수업료 30%

\* 성적우수장학금 장학인원 기준은 각 과정별로 학기차 구분없이 전체 성적순위 산정

**5. 기타 장학금**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
해외파견장학금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해외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재학생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방중파견	해외대학 수업료: 최대 50만원
		학기파견	해외대학 수업료: 최대 100만원
토픽장학금	대학원에 재학중인 유학생		토픽응시료 (재학중 2회)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
교직원복지장학금	이 대학교 교직원* ※ 교직원의 범위 : 전임교원, 정규직(일반직, 무기계약직) 직원	[일반대학원 제외] 입학금 100%, 수업료 100%
	이 대학교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	수업료 50%
가족장학금	우리 대학원에 가족2명 이상 재학시 1인의 학생	수업료 30%
참사랑장학금	장애인 학생 - 장애인 학생 가운데 중증장애(1, 2, 3급) 학생 및 경증장애(4, 5, 6급) 학생	일반대학원 : 수업료 50% 특수대학원 : 수업료 30%
다문화장학금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구성원)	
귀순자장학금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귀순자	
인턴십장학금	재학생으로서 교내 인턴십 근무자	별도금액
외부장학금	외부기관 또는 기탁자의 목적에 적합한 자	별도금액

## 6. 외국인장학금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	
일반대학원	1. 우수외국인 학생 (석사과정 입학시) 1) 토픽 6급 취득자 2) 학부 평균평점 4.3 이상 3) 재학시 평균평점 4.16 이상 유지 4) 우리대학 졸업자 또는 해외 한국어 관련학과 또는 협정대학 졸업자	입학금 50%, 수업료 100% (4학기)	
	2. 일반 외국인학생 1) 위 "1"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학생	본교출신	▶ 입학생 : 입학금 50%, 수업료 100% ▶ 재학생 : 수업료 50%
		타교출신	▶ 입학생 : 수업료 100% ▶ 재학생 : 수업료 50%
	타교 법무부 고시국가 출신으로 심의 미통과자	▶ 입학생 : 수업료 30% ▶ 재학생 : 수업료 50%	
교육대학원	본교 출신 외국인	입학금 50%, 수업료 30%	
	타교 출신 외국인	수업료 30%	
		단, 비교직과정 입학시 일반대학원 일반 외국인학생 장학 적용	
통역번역대학원	본교 출신 외국인	입학금 50%, 수업료 30%	
	타교 출신 외국인	수업료 30%	
산업·경영대학원	본교 출신 외국인	입학금 50%, 수업료 50%	
	타교 출신 외국인	수업료 50%	
기타	정부초청 장학프로그램을 통해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입학금: 100%, 수업료: 500만원 초과시 초과분 지급	
국제교류장학	협정체결된 자매대학 출신자	협정에 따른 지정 금액	

<별지 제1호 서식>

# 대학원장 장학금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 202 . . .		직전학기 수혜장학명		담당자확인	
신청인	소속	전공	학기차		학번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석사	학기차	
			<input type="checkbox"/> 박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 ※ 장학명 및 제출서류 [해당란에 √ 하세요]

1.학업격려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전업학생	일반대 학원만	신청서 1부, 최근 한 달 이내 발급된 의료보험증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단홈페이지 발급) 1부	매 학기 제출
	<input type="checkbox"/> 교직원,공무원,직장인	전체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input type="checkbox"/> 한국어교사양성과정이수	일반대 교육대	신청서 1부, 이수(수료)증명서 1부 <한국어교육학과(전공) 입학자에 한함>	
2.모교장학금	<input type="checkbox"/> 출신학과( )	전체	신청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3.외국인장학금	<input type="checkbox"/>	전체	신청서 1부	
4.교직원 복지장학금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전체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가족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5.가족장학금	<input type="checkbox"/>	전체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재학증명서 1부	
6.참사랑장학금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학생	전체	신청서 1부, 장애인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장애인 학생 가운데 중증 장애(1, 2, 3급) 학생 및 경증 장애(4, 5, 6급) 학생	
7.다문화장학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이주자/다문화가정 자녀	전체	신청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8.귀순자장학금	<input type="checkbox"/>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귀순자	전체	신청서 1부, 통일부 발급 귀순자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경우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모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제출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본 대학원 장학금신청서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장학금 지급 및 안내를 위한 문자발송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속, 전공, 학기차, 학번, 내국인유무
- 선택항목 :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수혜 장학명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4.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신청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오

각 대학원 장학금지급시행세칙에 따라 위와 같이 20 학년도 학기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장 귀하